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노식래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9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노식래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경만선, 권수정, 김경영, 김정태,
김제리, 문장길, 박기재, 박상구,
박순규, 안광석, 오현정, 이석주,
이영실, 최영주, 추승우, 홍성룡,
황규복 의원 (17명)

1. 제안 이유

- 의안이 발의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될 경우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-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3조제3항 신설).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